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64
----------	-----

발의년월일 : 2015년 10월 22일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 김진영, 박중화, 진두생, 김영한,  
이신혜, 김종욱, 이숙자, 우미경,  
이석주, 최호정, 강구덕 의원(11명)

##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2조, 제 4조, 제6조, 제8조, 제 9조, 제 14조)

##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영위하는 자”를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수립한 때에는”을 “수립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으로, 제4항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중 “판단하는 때에는”을 “판단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6 (생략)</p>	<p>제2조(정의)----- -----.</p> <p>1.~2. (현행과 같음)</p> <p>3. -----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 ----- ----- -----.</p> <p>가. 4~6 (현행과 같음)</p>
<p>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p> <p>①~② (생략)</p> <p>1~8 (생략)</p> <p>③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p> <p>①~② (현행과 같음)</p> <p>1~8 (현행과 같음)</p> <p>③ ----- 수립한 경우에는 ----- ----- -----.</p>
<p>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p> <p>① (생략)</p> <p>1~8 (생략)</p> <p>가~다 (생략)</p> <p>라.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p> <p>9.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p> <p>① (현행과 같음)</p> <p>1~8 (현행과 같음)</p> <p>가~다 (현행과 같음)</p> <p>라. ----- 해당 ----- ----- -----</p> <p>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협의회의 운영)</p> <p>① (생략)</p>	<p>제8조(협의회의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는</u>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④ (생략) 1~3 (생략) 4. <u>기타</u>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생략) ⑤~⑥ (생략)</p>	<p>② ----- ----- ----- ----- . -- <u>긴급한 조치가 필요한</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 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u>판단하는 때에는</u>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 <u>판단할 때에는</u> ----- ----- ----- .</p>
<p>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u>시행에 필요한 사항은</u> ----- .</p>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것임으로 추가 비용 발생의 요건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남창진